「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

2026. 11.

공정거래위원회

< 목 차 >

I. 가이드라인 개요

1. 목적 ····· 1
2. 적용 대상 및 효력 ····· 1

II.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개요

1. 도입 배경 및 목적 ····· 2
2. 관련 법령 ····· 2
3. 시행일 및 적용시점 ····· 4

III.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 5
2.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 ····· 6
3. 지정 대상 기준 ····· 7
   가. 매출액 규모 ····· 7
   나. 국내소비자 규모 ····· 8
   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및 소비자 피해 ····· 8

IV. 국내대리인의 지정

1. 국내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10
2.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 10
3. 복수 지정·대리 가능성 ····· 11
4. 고객센터 ····· 12
5. 국내대리인 지정 후 공정위 제출 ····· 12

V. 국내대리인의 역할 및 운영

1. 국내대리인 정보의 공개 ····· 14
2.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 15
   가. 해외 통신판매업자의 국내대리인 ····· 15
   나. 해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국내대리인 ····· 16
   다. 분쟁·불만처리 체계의 적정한 운영 ····· 17
3. 자료제출 명령 등에 대한 협조 ····· 18
4. 유효한 연락체계 구축 ····· 19

VI. 위반 시 제재

1. 해외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 20
2. 국내대리인 ····· 20

VII. 서식 ····· 21

I. 가이드라인 개요

1.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에 따라 도입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정 의무 대상자・지정 절차・국내대리인의 역할 및 책임・위반 시 제재 등 제도 전반에 관한 해석・운영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구체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 사항을 달성하고자 한다.

ㅇ 첫째, 해외 통신판매업자 혹은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해외 통신판매업자등”)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발생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이행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다.

ㅇ 둘째, 국내대리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와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여 소비자 보호 및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ㅇ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감독・집행 업무에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한다.

2. 적용 대상 및 효력

□ 이 가이드라인은 해외 통신판매업자등, 그리고 이들이 지정한 국내대리인에게 적용된다.

□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전자상거래법 및 시행령의 해석・집행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제도의 해석・운영 기준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II.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개요

1. 도입 배경 및 목적

□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다음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도입되었다.

○ 첫째,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자와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가 계약·이행·취소·환불 등과 관련하여 불만·분쟁 발생 시, 한국어로 즉시 연락·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하고, 국내대리인이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을 대신하여 책임있게 대응한다.

○ 둘째,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에 대한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조사 등을 신속·원활하게 집행하고 업무 협조를 담보한다.

2. 관련 법령

법률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나.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
2.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제1호나목의 사항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통신판매업자등은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전자상거래법 제25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법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3. 법을 위반하여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 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고, 해당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5제6항 전단에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재무제표 등 매출액에 관한 자료
2. 사이버몰 접속자 수 등 소비자 규모에 관한 자료

3. 시행일 및 적용시점

□ 이 가이드라인은 개정 전자상거래법(2026. 1. 20 개정 법률 제21312호) 부칙 제2호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시행일인 2027. 1. 21.에 법률과 함께 시행한다.

계도기간

제도의 원활한 안착 및 사업자들의 준수를 위하여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둔다.

계도기간이란 **법률로 정해진 의무의 유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은 자사의 2026년 말 기준 매출액·국내 MAU 실적을 잠정 집계하여 지정 의무 발생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지정 의무 발생 시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21일**까지 국내대리인 지정, 공정위 제출, 홈페이지 공개를 완료해야 한다.

III.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

관련 규정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5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법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3. **법을 위반하여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음 요건(1.~3.)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사업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여야 한다.

○ 영업소란 영업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 주된 영업소를 본점이라고 하고, 종속관계에 있는 영업소를 지점이라고 한다(상법 제21조제2항).

- 국내 지점이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 일정 부분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영업소로 인정될 수 있다.

○ 단, 국내 법인 등 독립된 법인격의 영업소는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의 영업소가 될 수 없다.

2.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

□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이어야 한다.

ㅇ 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고려 사항

① 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원화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
② 국내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 권유 등 영업활동을 행하였는지 여부
③ 국내 주소를 대상으로 배송하는 등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④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단, 이때의 보호 필요성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ㅇ 계약상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당사자가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하였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하 "해외사업자 설립 국내 법인")일 수 있다.

- 이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한 지배권*이 해외사업자에게 있고 해외사업자 설립 국내 법인이 유통·판매만을 대행하거나 라이선스받아 소비자에게 제공할 뿐이라면 이러한 해외사업자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에 해당한다.

  * 소유권, 상표권·저작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 아울러 해외사업자 설립 국내 법인이 통신판매업자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외사업자의 통신판매업자등으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ㅇ 다만, 해외사업자 설립 국내 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독립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위는 해외사업자를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고려 사항

① 해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와의 계약주체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② 국내 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③ 국내 법인이 독립적으로 이용약관, 환불 정책, 가격 등을 정하는지 여부
④ 국내 법인에게 발생한 이익의 귀속 및 처분이 해외 통신판매업자등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⑤ 국내 법인의 인사 및 조직, 주요 경영사항이 해외사업자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 해외사업자가 해외사업자 설립 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독립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는 경우, 사전에 공정위에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정 대상 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가. 매출액 규모

□ 직전 연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

ㅇ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전세계 매출액)을 의미하며,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예 시

① **매년 1.1~12.31이 사업연도인 경우**
→ **2026.1.1.~12.31. 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행일인 **2027.1.21.~12.31. 기간 지정 의무**
& 2028.1.1.부터는 2027.1.1.~12.31. 기준으로 지정 의무 판단

② **매년 4.1~3.31이 사업연도인 경우**
→ **2025.4.1.~2026.3.31. 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행일인 **2027.1.21. ~ 3.31. 기간 지정 의무**
& 2027.4.1.부터는 2026.4.1.~2027.3.31. 매출액 기준으로 지정 의무 판단

-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서울외국환중개(www.smbs.biz)에서 조회 가능

- 전체 매출액에는 해당 수범법인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지배하는 종속기업 매출액을 포함한다.

  · 종속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판단하되, 해당 수범법인이 국제회계기준 외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US GAAP 등)을 적법하게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 산정 대상 사업연도의 주된 재무보고에 일관되게 적용한 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전체 매출액은 해당 수범법인과 종속기업 사이 및 종속기업 상호 간의 내부거래 매출액을 제거하여 산정한다.

- 만약,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해외사업자는 자신이 아래 나. 국내소비자 규모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잠정 집계한 매출액이 1조원 내외(±5% 이내)에 있어 외부 감사를 통해 매출액이 확정되어야만 지정 의무 발생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공정위에 소명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당해 연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이러한 외부 감사를 통해 매출액이 확정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나. 국내소비자 규모

□ 직전 연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국내소비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

○ 소비자 수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Monthly Active User)’를 의미하며,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한 달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 MAU는 한 달(특정 월) 이내에 모바일앱・웹사이트 등 특정 서비스에 최소 한 번 이상 로그인・결제 등 실제 활동을 수행한 고유 이용자 수를 말한다.

- 동일 이용자가 한 달 동안 여러 번 활동해도 고유 이용자의 신원정보, 이용자 ID,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기준으로 1명으로 집계한다.

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및 소비자 피해

□ 매출액 또는 소비자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여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공정위에 보고하거나 자료・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자료・물건 제출 요구만으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공정위 판단에 따라 현저한 소비자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

○ 현저한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고려 사항

① 피해의 중대성 :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 여부
② 피해자의 수 : 많은 소비자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
③ 피해의 반복성·확산성 :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④ 피해의 긴급성·회복가능성 : 피해가 긴급을 요하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지 여부

- 현저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 이때 구체적인 자료란 현저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정의 근거자료*를 의미하며, 그 자체가 소비자 피해의 존재를 직접 입증하는 자료일 필요는 없다.

* 소비자 민원 발생 건수,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된 사실, 전문가 의견 등

○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단, 국내대리인을 기간 내에 지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 만약, 현저한 소비자 피해에 관한 공정위의 조사가 마무리*되었거나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해소되었다면, 공정위가 직권 혹은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의 신청에 의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의 소멸을 통보할 수 있다.

* 무혐의·심사절차종료·심의절차종료 등

Ⅳ. 국내대리인의 지정

관련 규정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통신판매업자등은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1. 국내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국내대리인은 자연인·법인을 불문하나, 한국어 소통·한국 영업시간 응대·공정위 협조 등 실효적 업무 수행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나, 국내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고객센터, 전문업체, 법률사무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통신판매업자의 유의사항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이 중개를 의뢰한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 불만·분쟁 처리에 관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통신판매중개자에 의해 대신 이행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중개자와 독립적으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담한다. 단, 이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의 별도 합의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 해외사업자 설립 국내 법인을 둔 경우, 반드시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임의로 다른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이라 함은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이 출자·발기에 참여한 법인을 의미한다.

- 다만,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이 과거에 설립한 국내 법인이라 할지라도 국내 법인이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의 국내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국내 법인은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현재 아무런 출자 관계나 임원 파견 등 지배력이나 계약 관계 등 연결점이 없을 때

ㅇ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 이 경우 ‘동일인’은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으로, ‘동일인관련자’는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법인으로 본다.

참고 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면한 회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해당 회사 간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해당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해당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해당 회사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

마. 그 밖에 해당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3. 복수 지정·대리 가능성

□ 하나의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이 복수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ㅇ 이 경우 모든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각각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하나의 국내대리인이 복수의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을 대리할 수 있다.

ㅇ 다만, 이 경우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복수의 해외 통신판매업자등마다 각기 다른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두는 것이 권장된다.

4. 고객센터

□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으로서 고객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고객센터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고객센터는 국내대리인 자격으로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뿐만 아니라 공정위로부터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조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

○ 특히, 이러한 고객센터는 법 제20조의5 제5항에 따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V. 4. 유효한 연락체계 구축” 참고)

□ 만약, 고객센터와 국내대리인이 서로 다른 자인 경우, 국내대리인은 고객센터에 국내대리인의 법정 업무 수행과 책임을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내대리인이 고객센터에 대한 업무 위탁 등을 통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전화 및 이메일 응대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 만약, 고객센터가 국내대리인이 답변하여야 할 사항을 고객센터에 대한 업무 위탁 등을 통하여 대신 답변하는 경우, 그 처리 방침 및 답변 내용에 대한 책임은 국내대리인과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이 직접 지며 고객센터가 이를 대신할 수 없다.

- 업무 위탁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고객센터에 국내대리인이 직접 처리해야 할 업무에 해당하는 민원을 제기한 경우 고객센터는 지체없이 소비자가 직접 국내대리인과 연락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및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5. 국내대리인 지정 후 공정위 제출

관련 규정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⑦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5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

③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 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고, 해당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은 지정 사실 및 국내대리인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ㅇ 이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 확인서를 아래 공정위 주소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대리인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 변경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Ⅶ. 서식’ 참고)

지정 확인서 및 정보 변경확인서 제출처

(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전자우편) kftc_ecomm@korea.kr

V. 국내대리인의 역할 및 운영

관련 규정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⑦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5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

③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 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고, **해당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1. 국내대리인 정보의 공개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정위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국내대리인 정보*를 누락 없이 한국어로 표시해야 한다.

*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이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내대리인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 등이 표기된 곳에 국내대리인 정보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해외 통신판매업자가 국내대리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입점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내 판매자 정보 혹은 상품 정보 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내대리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 국내대리인이 고객센터에 업무를 위탁하였다는 이유로 국내대리인의 정보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고객센터의 것으로 대신하여 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대리인 전화번호를 고객센터의 것으로 표시하는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센터가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국내대리인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전화번호를 갖추고 있으며, 고객센터에 위임된 업무의 범위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국내대리인 전화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전자문서 송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전자우편 주소는 고객센터의 것으로 표시할 수 없다.

2.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가. 해외 통신판매업자의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⑤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해외 통신판매업자의 국내대리인은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해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전자상거래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5조의2(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2.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이버몰에 고지**할 것
3.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

□ 해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준수 사항

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②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이버몰에 고지할 것

③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

다. 분쟁·불만처리 체계의 적정한 운영

관련 규정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이 국내대리인의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 이 경우 직접 관련된 행위자가 국내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대리인은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을 대리하여 이러한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국내대리인이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결과적으로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이 이러한 규정을 어긴 것에 해당한다.

○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국내대리인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은 준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준수 사항

① 연락수단

- **다른 절차를 우선 밟거나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전화와 전자우편 주소를 모두 이용하여 국내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있을 것**
  - **이와는 별도로 ARS, 온라인 문의 접수, AI 챗봇 및 웹 기반 상담 시스템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화 응대

- **국내대리인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국내 전화번호를 공개할 것**
-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
  - **전화 응대 직원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그 국적이 한국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 **한국 영업시간(9시~18시)에 맞게 소비자 응대가 이루어질 것**
- **직원이 직접 응대할 것**
  - **음성사서함 또는 ARS를 통한 자동응답만을 운영하거나, 직원이 직접 응대하더라도 내용에 대한 답변 없이 전자우편·온라인 양식 이용을 안내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전자우편 응대**

- **소비자가 전자우편 주소로 문의한 경우 한국어로 처리 상황 및 처리 결과를 회신할 것**
- **소비자에 대한 전자우편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것**
  - **자세한 설명 없이 소비자 보호 방침이나 고객센터 링크만 제공하는 등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답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 소비자 문의가 전형적으로 약관·환불 정책·FAQ 등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사항으로서, 해당 링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문의 내용에 직접 한정되는 등 링크의 내용만으로 소비자 문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자료제출 명령 등에 대한 협조

관련 규정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

2.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제1호나목의 사항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의 국내대리인은 경영상황보고, 자료제출명령, 자료 또는 물건의 일시보관 등 전자상거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유효한 연락체계 구축

관련 규정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⑤ 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의 국내대리인은 해외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유효한 연락수단 확보 여부는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이 휴일·공휴일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대리인이 문의·전달한 내용 등에 관해 다음 기간 내 적절한 회신*을 받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문의한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검토 내용 혹은 회신 일정과 검토 담당자의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적정 기간 내에 회신을 기대할 수 있는 것

판단 기준

① 일반적인 소비자 문의 : 3영업일 이내
② 긴급한 소비자 피해 혹은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 등 : 24시간 이내

Ⅵ. 위반 시 제재

1. 해외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이 직접 법을 위반한 경우와 그 제재는 아래와 같다.

제재사항 및 근거

	의무의 내용	위반 시 제재	관련 법조문
1	국내대리인 지정	시정조치, 과태료(2천만원 이하)	법 제20조의5 ①
2	국내 법인이 있을 시 국내 법인 지정의무	시정조치, 과태료(2천만원 이하)	법 제20조의5 ②
3	국내대리인 정보 제출 및 공개	시정조치, 과태료(2천만원 이하)	법 제20조의5 ③
4	유효한 연락수단 확보	시정조치	법 제20조의5 ⑤
5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과태료(2천만원 이하)	법 제20조의5 ⑥

2. 국내대리인

□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국내대리인이 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아울러, 국내대리인이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결과적으로 해외 통신판매업자등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법을 위반한 경우와 그에 따른 제재는 다음과 같다.

제재사항 및 근거

<table>
<tr><th></th><th>의무의 내용</th><th>위반 시 제재</th><th>관련 법조문</th></tr>
<tr><td rowspan="2">1</td><td rowspan="2">통신판매업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등에 관한 신의성실 이행 의무</td><td>시정조치</td><td>법 제13조 ⑤
법 제20조의5 ①</td></tr>
<tr><td colspan="2">※ 이와 별도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금지의무(법 제21조 ①) 위반으로 시정조치, 임시중지명령, 과태료(2천만원 이하) 등 가능</td></tr>
<tr><td>2</td><td>통신판매중개업자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 등</td><td>시정조치, 과태료(2천만원 이하)</td><td>법 제20조 ③
법 제20조의5 ①</td></tr>
<tr><td>3</td><td>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 등에의 협조</td><td>과태료(3천만원 이하)</td><td>법 제20조의5 ①</td></tr>
<tr><td>4</td><td>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td><td>시정조치, 과태료(2천만원 이하)</td><td>법 제21조 ①</td></tr>
</table>

VII. 서식

국내대리인 지정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대상자	성명·법인명(상호)		대표자명
	주소(본점 소재지)		
	국내대리인 지정 업무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구분	[ ] 통신판매업자, [ ] 통신판매중개업자 (해당되는 란에 ✔ 표시,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두 개 모두에 ✔)	
	사이버몰	(사이버몰 주소 또는 사이버몰을 운영 중인 앱의 명칭,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국내 대리인	성명·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 ]해외사업자 설립·지배 국내 법인, [ ] 법률사무소, [ ] 고객센터, [ ] 기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 ·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대상자의 성명·법인명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함께 기재된 인증문서 2.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명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함께 기재된 인증문서	없음

210㎜× 297㎜[백상지 80g/㎡]

국내대리인 정보 변경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대상자	성명·법인명(상호)		대표자명
	주소(본점 소재지)		
	국내대리인 지정 업무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변경 국내 대리인 정보	성명·법인명		대표자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 ]해외사업자 설립·지배 국내 법인, [ ] 법률사무소, [ ] 고객센터, [ ] 기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어 그 사실을 확인 ·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귀하

첨부서류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명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함께 기재된 인증문서	수수료 없음

210㎜× 297㎜[백상지 80g/㎡]